

「평창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- 제안일자 및 제안자: 2024년 4월 4일, 평창군수 제출
- 회부일자: 2024년 4월 16일 회부
- 상정일자: 제293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
(2024년 4월 16일 상정·의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: 경제과장)

가. 제안이유

- 전통시장 내에 군에서 조성한 공유재산을 사용하고 관리함에 있어, 실제 시설을 사용하는 상인들 및 상인회의 이용 부담을 줄여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공유재산 사용료 규정 신설(안 제31조의2)
 - (현행) 「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」 제28조에 따라 1,000분의 50
 - (개정) 「평창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」에
1,000분의 10 개별조항 마련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(전문위원: 김영옥)

※ 검토보고서 전문 [붙임 1]

4. 질의 및 답변 요지: 「생략」

5. 토론 요지: 「없음」

6. 심사 결과: 「원안가결」

7. 소수의견 요지: 「없음」

8. 기타 사항: 「없음」

붙임 1. 평창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
보고서 1부.

2. 평창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
[붙임 1]

제293회 평창군의회 임시회

조례심사특별위원회(2024. 4. 16.)

「평창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조례심사특별위원회

(전문위원 김 영 옥)

「평창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1. 조례안 개요

- 제 안 자 : 평창군수 제출
- 제안일자 : 2024. 4. 4.
- 회부일자 : 2024. 4. 16.
- 상정일자 : 2024. 4. 16.

2. 제안이유

- 전통시장 내에 군에서 조성한 공유재산을 사용하고 관리함에 있어, 실제 시설을 사용하는 상인들 및 상인회의 이용 부담을 줄여 전통 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공유재산 사용료 규정 신설(안 제31조의2)
 - (현행) 「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」 제28조에 따라 1,000분의 50
 - (개정) 「평창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」에 1,000분의 10 개별조항 마련

4. 검토의견

가. 관련 근거

-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을 받아 설치한 상업기반 시설의 사후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,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 제14조에서 연간 사용료는 재산 평정가액의 연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나. 입법의 취지

- 시장 내 공유재산 사용료를 조정하여 관내 상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전통시장의 활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.

다. 조례안의 주요내용

- 안 제31조의2(공유재산의 사용료)를 신설하여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에 따라 취득한 공유재산¹⁾의 연간 사용료를 해당 재산 평정가액의 1,000분의 10으로 별도 규정함.

1) 「평창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」

제29조(시설물의 소유권) ① 법 제11조와 제20조에 따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을 지원 받아 시장, 상권활성화구역과 상점가에 설치한 시설물 중 군수의 소유로 하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한 주차장, 도로 등 기반시설과 화장실 등
2. 제1항 외의 시설물로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. 다만, 시설물이 독립되어 있지 아니하여 소유권 분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군수가 인정한 시설물은 협약에 따라 군수의 소유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- 안 부칙 제2조(다른 조례의 폐지)에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하여 전반적으로 규정한 본 조례 이전에 제정되었던 「평창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·관리 등에 관한 조례」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임.

5. 종합검토의견

- 시장 내 공유재산 사용료를 조정하여 상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전통시장의 활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의 취지는 인정되고 상위법령의 범위 내에서 규정된 것으로 확인됨.

□ **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**

제11조(상점가 활성화 지원)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65조에 따른 상인회 또는 「유통산업발전법」 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이 상점가 활성화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제20조, 제21조,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, 제29조 및 제30조를 준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.

②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의 지원대상, 절차 및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설치한 상업기반시설의 사후 관리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19조의7(상권활성화 지원)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9조의8에 따른 상권관리기구 등이 상권활성화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제20조, 제21조 및 제23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② 상권활성화사업의 지원대상, 사업별 지원한도, 절차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□ **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**

제5조(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의 지원대상 등) ③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설치한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의 시설물에 대한 사후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9조제3항에 따른 특별자치도·시·군·구(이하 “시·군·구”라 한다)의 조례를 준용하거나, 시·군·구에서 별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.

□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

제14조(사용료)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연간 사용료는 시가(時價)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(評定價格)의 연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, 월할(月割) 또는 일할(日割)로 계산할 수 있다. 다만, 다른 법령에서 행정재산의 사용료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르며,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재난에 따른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(연 1천분의 10 이상이어야 한다)을 적용할 수 있다.

[붙임 2]

**평창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**

제출자 : 평 창 군 수

평창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61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24. 4. 4.

제 출 자 : 평 창 군 수

1. 제안이유

전통시장 내에 군에서 마련한 공유재산을 사용하고 관리함에 있어, 발생한 어려운 점을 현 실정에 맞도록 개선하고, 실제 시설을 사용하는 상인들 및 상인회의 이용부담을 줄여, 전통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공유재산 사용료 규정 신설(안 제31조의2)

- 「평창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」에 1,000분의 10 개별조항 마련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해당사항 없음 또는 직접 작성 또는 별첨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

1) 입법예고(2024. 2. 16. ~ 2024. 3. 7.) 결과, 의견제출 없음

2) 규제심사 : 비규제

3) 부패영향평가 : 원안동의

4) 성별영향평가 : 개선사항 없음

5) 조례·규칙심의회 : 원안의결

평창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평창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1조의2(공유재산의 사용료) 법에 따라 취득한 공유재산의 연간 사용료는 「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」 제20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산 평정가액의 연 1천분의 10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폐지) 「평창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·관리 등에 관한 조례」는 폐지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p><u>제31조의2(공유재산의 사용료) 법</u> <u>에 따라 취득한 공유재산의 연</u> <u>간 사용료는 「평창군 공유재산</u> <u>관리 조례」 제20조제3항에도</u> <u>불구하고 해당 재산 평정가액의</u> <u>연 1천분의 10으로 한다.</u></p>

관계법령 발취

□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

제14조(사용료)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연간 사용료는 시가(時價)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(評定價格)의 연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, 월할(月割) 또는 일할(日割)로 계산할 수 있다.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(제3조제5항 관련)

1. 비용발생 요인

- 해당사항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5항제1호

3. 미첨부 사유

-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
총 1억원 미만의 경우

4. 작성자

작성자	평창군 경제건설국 경제과장 이 서 진
연락처	(033) 330 - 2761